

2019. 3. 25.(월)

---

-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---



**인천광역시의회**  
Incheon Metropolitan Council

# 목 차

I.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..... 3

II. 변경계획안 검토 ..... 5

III. 심사 결과 ..... 9

# I

##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### 가. 기금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기 금 명                   | 설치년도 | 자금운용계획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소관부서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추경예산액(A) | 기정예산액(B) | 증감액(A-B) | 증감률   |   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660,246  | 658,456  | 1,790    | 0.3   |                  |
| 통합관리기금                  | 2000 | 46,618   | 62,864   | △16,246  | △25.8 | 예산담당관            |
|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         | 2004 | 3,350    | 3,350    | -        | -     |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      |
| 지방채상환기금                 | 1999 | 34,103   | 34,103   | -        | -     | 재정관리담당관          |
| 지역개발기금                  | 2017 | 224,634  | 224,634  | -        | -     | 재정관리담당관          |
| 지방세발전기금                 | 2011 | 745      | 702      | 43       | 6.1   | 세정담당관            |
| 재난관리기금                  | 1998 | 123,502  | 123,502  | -        | -     | 안전정책과            |
| 재해구호기금                  | 2006 | 42,918   | 42,918   | -        | -     | 재난예방과            |
| 사회복지기금                  | 1994 | 965      | 965      | -        | -     | 복지정책과<br>노인정책과   |
| 식품진흥기금                  | 1989 | 2,897    | 2,897    | -        | -     | 위생안전과            |
|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       | 1997 | 338      | 238      | 100      | 42.0  | 여성정책과            |
| 화장시설주변지역<br>주민지원기금      | 2017 | 1,165    | 1,165    | -        | -     | 노인정책과            |
|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        | 1994 | 35,691   | 35,691   | -        | -     | 주거재생과         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                | 1993 | 99,375   | 89,079   | 10,296   | 11.6  | 산업진흥과<br>소상공인정책과 |
| 에너지사업기금                 | 1992 | 15,319   | 10,630   | 4,689    | 44.1  | 에너지정책과           |
| 농어촌진흥기금                 | 1998 | 10,406   | 10,406   | -        | -     | 농축산유통과           |
|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<br>약취방지시설기금 | 2018 | 18,220   | 15,312   | 2,908    | 19.0  | 대기보전과            |

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
## 나. 기금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기 금 명                   | '18년도 말<br>조성액 ㉠         | '19년도 기금운용계획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'19년도 말<br>조성액<br>㉡=㉠+㉢-㉣ | 증 감<br>㉡-㉠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 ㉢                 | 지출 ㉣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16개 기금                  | 1,354,783<br>(1,210,867) | 317,198<br>(307,566) | 399,674<br>(368,096) | 1,272,307<br>(1,150,337)  | △82,476<br>(△60,530) |
| 통합관리기금                  | 143,916                  | 9,632                | 31,578               | 121,970                   | △21,946              |
|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         | 1,335                    | 2,015                | 1,658                | 1,692                     | 357                  |
| 지방채상환기금                 | 12,863                   | 21,240               | 34,100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12,860              |
| 지역개발기금                  | 909,881                  | 150,813              | 178,907              | 881,787                   | △28,094              |
| 지방세발전기금                 | 111                      | 635                  | 584                  | 162                       | 51                   |
| 재난관리기금                  | 79,342                   | 52,048               | 49,428               | 81,962                    | 2,620                |
| 재해구호기금                  | 28,074                   | 14,844               | 3,800                | 39,118                    | 11,044               |
| 사회복지기금                  | 10,741                   | 459                  | 456                  | 10,744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진흥기금                  | 6,052                    | 1,329                | 1,590                | 5,791                     | △261                 |
| 양성평등기금                  | 4,095                    | 185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| 4,180                     | 85                   |
| 화장시설주변지역<br>주민지원기금      | 550                      | 615                  | 419                  | 746                       | 196                  |
|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        | 33,242                   | 33,327               | 25,993               | 40,576                    | 7,334  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                | 74,808                   | 24,872               | 57,370               | 42,310                    | △32,498              |
| 에너지사업기금                 | 21,870                   | 4,461                | 10,284               | 16,047                    | △5,823               |
| 농어촌진흥기금                 | 10,098                   | 308                  | 834                  | 9,572                     | △526                 |
|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<br>약취방지시설기금 | 17,805                   | 415                  | 2,573                | 15,647                    | △2,158               |

※ ( )는 통합관리기금 제외 금액

### 가. 기금운영 변경계획 제출 사유

- 인천광역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 목적사업에 용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및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총 16개 기금이 설치·운용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1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및 각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그 그거를 두고 있음.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)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3) 규정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, 지방세발전기금, 양성평등기금, 중소기업육성기금, 에너지사업기금,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 시설기금 등 6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.

- 
- 1)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2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- 3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  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나.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

### 1) 통합관리기금

-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,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
- 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 154억 원<sup>4)</sup>, 이자수입 8억 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629억 원 대비 25.8%, 162억 원을 감액한 466억 원을 편성하였음.
- 지출사항 변동으로 정책사업(재무활동)에 예탁금 80억 원, 예수금이자 상환 2억 6,000만 원, 금융기관 예치금 8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,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음.

#### < 정책(재무활동)사업 변동사항 >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과 목             | 1차변경액(A) | 기정예산(B) | 증감액(A-B) | 증감률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재 무 활 동         | 46,618   | 62,864  | △16,246  | △25.8 |
| 예 탁 금           | 14,759   | 22,759  | △8,000   | △35.2 |
|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| 31,578   | 31,840  | △262     | △0.8  |
| 예 치 금           | 281      | 8,265   | △7,984   | △96.6 |

### 2) 지방세발전기금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 제1항에 따라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
- 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 4,3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7억 원 대비 6.1% 증액된 7억 5,000만 원을 편성하였음.

4)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계획 변경(△12,777백만 원) 등에 따른 감소

- 지출사항 변동으로 정책사업(재무활동)에 수입증가분 4,300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임.

### 3) 양성평등기금

-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억 4,000만 원 대비 42.0% 증액된 3억 4,000만 원을 편성하였음.
- 지출사항 변동으로 정책사업(재무활동)에 수입증가분 1억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임.

### 4) 중소기업육성기금

- 일반회계 전입금, 정부차입금(중소기업진흥공단)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본예산 편성이후의 예치금 회수 계상액 103억 원의 증액사항을 지출계획 정책사업(재무활동)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음.

### 5) 에너지사업기금

-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, 한국가스공사 주주 배당금 등의 재원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,000만 원 감액<sup>5)</sup>,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 따른 49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106억 원 대비 44.1%, 47억 원이 증액된 153억 원을 편성함.

5)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

- 지출변동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1억 8,000만 원 감액과 인천항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사업<sup>6)</sup>에 5억 3,000만 원을 증액하였고, 예치금 4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변경 예산이 반영되었음.

## 6) 남동산업단지및주변악취방지시설기금

-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연금,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본예산 편성이후의 예치금 회수 계상액 29억 원의 증액사항을 지출계획 정책사업(재무활동)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음.

---

6) ① 사업규모 : 태양광 400kW, ESS(에너지저장장치) 2,563kWh  
② 사업비 : 2,800백만원(국비 770, 시비 530(기금), 민간 1,500)  
③ 사업내용 : 인천항 내항 도수로 해수면에 해양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여 항만내 정박 중인 소형선박 9척이 사용하는 경유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(AMP)으로 대체하고 잉여전력은 ESS에 저장하여 전기차 충전소 운영 등에 활용



### Ⅲ

## 심사 결과

---

1. 질의토론 요지 : 생략
2. 심사결과 : 승인
3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